

(사)대전광역시축구 협회 정관

2016년 3월 27일 제정
2017년 2월 10일 개정
2018년 1월 30일 개정
2018년 7월 16일 개정
2019년 1월 10일 개정
2020년 2월 5일 개정
2020년 11월 6일 개정
2022년 2월 10일 개정
2023년 2월 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3조에 의거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축구 협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협회는 축구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해야 하며 (사) 대전광역시 축구 협회 (이하 “본 협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Daejeon Football Association”(약칭“DF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 협회는 축구 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대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협회는 본 협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각 구 축구협회, 풋살연맹 등의 회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소재지) ① 본 협회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② 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구 육성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축구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축구에 관한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자치구 축구 단체 및 풋살연맹의 지도 및 지원
5. 축구 대회의 개최 및 주관
6. 축구 경기 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축구의 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축구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9. 축구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축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1. 본 협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원조달을 위한 수익 사업
12. 그 밖의 축구 진흥 및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협회는 구 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축구 보급 및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의2(운영비 지원) 본 협회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매년 지급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구 협회 및 풋살 연맹은 본 협회의 대의원총회(이하“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구 협회 및 풋살 연맹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의 회원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한다) 및 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회 산하에 시 단위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본 협회에 관한 구 축구협회, 연맹체 등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시규모연맹체) ① 제5조3항에 따른 시연맹체는 구 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시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구 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시규모연맹체의 조직, 운영,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규약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예외 심사
4. 정기 감사의 실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본 협회는 풋살연맹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본 협회는 체육회 정관 제8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5.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의 정관·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의 사업 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본 협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협회는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 협회 및 풋살연맹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가 제6조제2항의 의무를 해태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는 본 협회에 대하여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고, 체육회 정관 제10조의2에 의거 제명할 수 있으며, 본 협회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직무 관련 비리 임·직원

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준회원단체는 제1항 제1호의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⑤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4항과 같이 도핑방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각 구 협회의 장

2. 등록 팀 육성학교장 및 기관장

3. 풋살연맹의 장

4. 본 협회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육성학교장, 육성기관장은 축구 관련 부서 직원).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 협회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회의에서 제5항과 같이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본 협회장은 등록 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 분야는 학생부와 일반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 대표 4인 이하. 다만, 종목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본 협회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 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⑨ 제1항의 대의원 임기 중에 교체 된 경우에는 시 체육회의 인준 사항을 대한축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구 협회 및 연맹체의 설치, 가입 및 제명

3. 본 협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 본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결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본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전국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정관 외 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 대한 축구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본 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요 사항

제15조(이사회 소집) ① 본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본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서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본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제18조(임원)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 (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3. 이사 15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본 협회 총회 의결로 2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

③ 본 협회의 임원은 본 협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본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 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 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회의 회장 선출 기구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본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 별 기탁금의 금액 등 본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19조의 3(당선인 결정)

-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 4(기탁금 반환)

- ① 본 협회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본 협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 협회에서 직접 선거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 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본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 협회(구 협회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 본 협회, 구 체육회 및 구 축구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본 협회, 구 체육회 및 구 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④ 본 협회(구 협회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 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본 협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협회에 회장 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

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본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③ 임원 구성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 대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시 대표 출신자가 없을 경우 선수 출신자로 이를 대신한다.

3.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 3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1항의 대의원 중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본 협회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본 협회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3조(임원의 겸직 제한) ① 본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근대 5종, 바이애슬론, 철인 3종,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및 수중·핀 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 협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의 회원단체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소속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로 선임된 자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 협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본 협회의 임원이 본 협회 또는 체육회,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구 회원종목단체 (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본 협회의 임원이 본 협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 처분을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본 협회의 임원이 본 협회의 운영 외의 범죄 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구 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①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③ 제25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 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 ④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본 협회·구 축구협회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회원종목단체·구회원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회원종목단체·구회원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 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 협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본 협회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협회 간 거래 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익이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 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본 협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정관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 협회, 풋살연맹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 제1항 각 호(제6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 축구협회, 풋살연맹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구 협회, 풋살연맹은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각 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 협회는 구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풋살연맹은 본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 체육회 소재지(풋살연맹은 본 협회 관할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 협회는 구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동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풋살연맹은 각 구에 구 연맹을 둘 수 있다).

제29조(구 축구협회 및 풋살연맹의 총회) ① 구 축구협회의 대의원은 구 종목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풋살연맹은 구 연맹의 장을 포함하여 각 구별 1인으로 구성).

② 구 축구협회 및 풋살연맹은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구 축구협회 및 풋살연맹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5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 체육회(풋살연맹은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전체 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구 협회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 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 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 분야는 동호인 조직 대표 4인 이하

⑤ 구 축구협회의 장은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구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구 축구협회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의 회의 소집을 기피 할 때에는 등록 팀과 동호인 조직의 3분의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당해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과 동호인조직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 체육회는 제29조 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 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전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 소집) 구 협회, 풋살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제31조의2(구협회 및 풋살연맹의 규정) 구 종목단체, 풋살연맹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결격 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따라 구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총회 구성 불가 시 대체 기관) ① 구 협회는 구 지회의 수 및 단체 군별 등록팀 및 동호인 조직 등록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풋살연맹은 이에 준해 본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경우 구 협회, 풋살연맹의 장 1인 이상 및 동호인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인 이상을 각각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 인준 등) ① 구 협회 및 풋살연맹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협회의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는 1항에 따른 인준 동의 여부를 체육회와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구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구 체육회가 인준한 구 협회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구 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 체육회는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 협회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 협회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풋살연맹은 본 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규정 등 승인) ① 구 협회는 제31조의2에 따라 구 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 협회의 정과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협회와 협의를 거쳐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 체육회는 구 협회가 정과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본 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구 협회는 축구의 대회 운영 규정 등 축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 협회. 풋살연맹은 본 협회에 구 축구협회 및 풋살연맹의 정관(규약) 및 회장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구 체육회 및 한국풋살연맹에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 체육회 및 한국풋살연맹은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축구협회 및 풋살연맹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본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 결과 업무 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해서 구 협회 및 풋살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협회 및 풋살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구 축구협회 및 풋살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 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구 체육회에 대해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풋살연맹에 대해서는 본 협회가 이에 준하는 요구를 한국풋살연맹에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 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 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 협회의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 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1항 이외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단, 스포츠공정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본 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스포츠 공정위원회) ① 본 협회는 본 협회 및 구 축구협회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체육단체 및 구·동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 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본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 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자원) 본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임원 찬조금
3. 사업 수입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회원단체 회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 사업비로 이월
3.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 업무적인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② 본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의 재산 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본 협회, 구 체육회, 구 협회의 임직원
2. 본 협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본 협회, 구 체육회, 구 협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본 협회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체육회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협회와 구 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장, 대한체육회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본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 대한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본 협회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회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전광역시장, 대한체육회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회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48조(회원종목단체 평가) ① 본 협회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회원종목단체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본 협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포함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본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26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 본 협회 및 구 협회의 임원(감사는 제외함)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6조, 체육회 정관 제30조, 구 체육회 규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종목의 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 운영 등) 본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51조(해산) ① 본 협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 결의 또는 대전광역시장의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 재산은 시 금고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정관변경) ① 본 협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본 협회의 총회에서 의결하여 체육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는 본 협회가 정관의 개·수정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체육회가 본 협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정·개정) ① 본 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영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한다.

③ 본 협회의 정관 및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본 정관은 회원종목단체 정관에 우선한다.

② 본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영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상위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본 협회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본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 결과와 그 외 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3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대전체육회의 축구협회와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축구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시행 당시 (구)대전체육회의 축구협회와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축구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본 협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③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 규정 제25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이 규정 시행 당시 본 협회 임원은 이 규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3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 ⑥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전체육회의 축구협회와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축구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이 규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회장이 취임한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 ⑦ 본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는 (구)대전체육회의 축구협회와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축구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대전체육회의 축구협회와 (구)대전생활체육회의 축구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임기는 중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중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⑧ (구)대전체육회 가맹회원단체로 가입할 당시 이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본 협회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한다.
- ⑨ 본 협회의 회장 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 횟수에 관해서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⑩ 본 협회가 시 체육회 회원종목 운영 규정에 의거 정관(규약)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본 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시 체육회 승인을 얻어 제25조(회장의 선출)에 의거 선출된 회장의 임기도 2020년 12월까지로 한다. 다만, 본 협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 체육회에 승인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부칙(2016. 9.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규약)은 대의원총회에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10)

제1조(조직) 여자연맹, 풋살연맹을 조직에 포함이 된다.

부칙(2018. 1. 30)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규약)은 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하여 대전광역시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체육회 공문(경기운영팀-824) 회원종목단체 운영 규정 제 개정 요청으로 정관 개정.

② “생활 축구” 명칭을 대한 축구 협회 명칭 변경에 따라 “동호인 축구”로 변경.

부칙(2019. 1.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규약)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규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제정 부칙(2016.3.21.) 제2조 제5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회원종목단체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제13장 부칙 제2조 제5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부칙(2022.02.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47조의2 관련)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회원종목단체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 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회원종목단체 책임자는 고발 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 처리 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인사 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구 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대한 조치)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구 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